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12750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21	작성 일자	2025. 12. 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권영희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5.12.18. 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2. 24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김민정	1372호	현황조사	점포 임차인	2024.04.30.~ 2025.04.30.			55,000	2024.05.03.		
<비고> 김민정: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나, 권리신고 없으므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임. 집합건축물대상상 용도는 판매시설임.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12750

[물건 21]

2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9-1
르네시떼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

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
지하2층 지상6층
판매시설, 업무시설, 주차장
1층 11721.58㎡
2층 12500.62㎡
3층 12501.51㎡
4층 11386.98㎡
중4층 4408.77㎡
5층 11391.77㎡
6층 5438.75㎡
지하1층 19159.06㎡
지하2층 20890.98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층1372호
철골철근콘크리트조
6.611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9-1
대 23702.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23,702.2분의 4.2247

감정평가액		28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14	28,000,000	2,800,000
2회	2026.02.25	19,600,000	1,960,000
3회	2026.04.01	13,720,000	1,372,000
4회	2026.05.06	9,604,000	960,400

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임.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시설임.

